



이슈리포트

2007.1.30

산재보상 및 자체배상

KT노동조합

www.kttu.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전화:031-727-4800 ■팩스: 031-727-4815

I. 산재보험보상

1. 정의

직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하 "산재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

2. 보험관계 등의 신고

가. 성립신고

- 1) 성립일자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 2) 신고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법 실무편람 부록Ⅱ 참조)
- 3)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

나. 소멸신고

- 1) 소멸일자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 2) 신고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산재법 실무편람 부록Ⅱ 참조)
- 3)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소멸신고 및 확정보험료 신고·납부(30일이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10%) 및 연체금이 부과됨

다. 변경사항 신고

- 1) 신고사유 : 기관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변경시
- 2) 신고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법 실무편람 부록Ⅱ 참조)
- 3) 신고기한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시마다)

라. 재해발생신고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요양신청서(또는 유족급여청구서) 및 첨부서류(재해발생경위서등) 제출로 같음

3. 산재보험보상(보험급여)의 청구

가. 청구권자: 재해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
나. 청구기한: 제한없음 (단,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다. 기관장 조력의무

- 1) 수급권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을 행하기 곤란한 경우
- 2)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

4. 산재보험보상의 종류와 금액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	비고
요양급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4일이상의 요양)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 (약값 포함)	회사 본인부담액 보상 및 산재법령 미적용자 보상
휴업급여	산재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회사 휴업급여 차액보상
장해급여	업무상재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1등급 1,474일분 ~ 14등급 55일분)	1-3등급:연금 4-7등급:연금 또는 일시금 8-14등급:일시금
간병급여	요양종결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해 1-2등급)	상시간병:1일38,240원 수시간병:1일25,490원	노동부장관 고시 (2007.1.1.기준)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연금:(평균임금X365)X47% + 부양가족수X5% (부양가족은 최고 4인까지) 일시금:1,300일분	연금지급원칙 (일시금 50% 지급可)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2년 경과후 폐질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 (1등급 329일분 ~ 3등급 257일분)	연금만 가능 (휴업급여 지급중단) 요양개시 3년 경과후 상병연금 수급자는 해고가능
장외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저 7,867,410원 ~ 최고 11,176,020원)	최고, 최저한도 신설 유족보상과 동시에 청구

* 최고보상기준임금 : 157,220원(1일)(약2

억4백만원)

* 최저보상기준임금 : 46,933원(1일)2007.1-1-200712.31까지 매년변동

5. 질병재해의 산재처리

가.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확보

1) 병원후송 : 재해자 발생시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하고, 사망시 경찰서 신고 및 노동부 보고(중대재해발생보고)

2) 최초진단서(사망이전) : 재해자의 상태, 질병명, 질병원인 등

3) 사망진단서

가) 병원후송후 사망시 사망진단서 발급

나) "사망의 종류"란에 "①병사"로 기재여부 필히 확인 ⇒ "③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사와 협의

다) "사망원인"란의 "직접사인", "중간사인", "선행사인"란에 질병명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미상" 또는 "원인불명"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4) 사체검안서

가) 병원도착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 발급

나) 내용확인용 사망진단서와 동일

5) 원인불명의 재해

가)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한다. (공단 산재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3항)

나) "공단이 다른 이유에서 기인했다는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2001.5.15.서울고법)

※ 원인불명의 재해에 대하여 사체부검 실시여부를 유족 및 전문가와 검토후 사체부검 실시여부 결정

6) 의사소견서

가) 소견서 예시 :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나) 유족이 직접 의사에게 요청(호소)하여 위 예시와 같은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유족에게 설명(안내)

나. 복무상황 자료

1) 자격요건 및 분장업무 : 재해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분장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2) 최근 3개월 주요수행업무

가) 일반적인 근무환경 : 사규상 근무상황(시간) 및 실제 근무상황(출근 및 퇴근시간, 야근, 휴일근무 실적 등)

나) 최근 3개월, 1개월, 1주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

라) 재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결과

마) 업무의 중요성 및 직무수행상 전문지식의 요구정도

바) 근무내용의 긴박성, 업무상 스트레스

3) 최근 3일의 업무처리상황

가) 최근 3일간 시간대별 업무처리상황(처리내용)을 작성

나) 사고전날 및 사고당일은 아주 상세하게 작성

다) 전화통화, 보고, 회의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사항

라) 병원출입 및 약복용 상황

마) 동료(주변) 직원들과의 대화내용("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등)

※ 기존에 질병이 있는 경우 재해자가 기존에 질병이 있다 할 지라도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됨

다. 진술서, 작업일지 등 준비자료

1) 진술서

가) 목격자, 동료직원, 관리자, 가족 등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와 관련이 있는 자

나) 진술서 작성시 사고경위, 근무실태,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의 내용과 일치되도록(일관성 있게) 유의하여 작성

2) 작업일지, 업무노트, 업무보고서(주례 등), 휴일근무, 초과근무실적 등

3) 기타 사고당일에 급격한 기상변화가 있을 경우 기상청에 협조요청하여 시간대별 기온변동상황(일교차 심할 경우) 등의 자료

※ 소속기관장(위임가능) 및 가족이 공단에 출석하여 문답조서를 작성할 때 아래 증빙자료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

라. 입증자료 첨부목록 (유족급여청구서에 첨부)

1) 증제1호 인사기록카드(계약직은 고용계약서) 사본

2) 증제2호 근무상황카드 사본

3) 증제3호 회사조직표(직원수 포함)

4) 증제4호 사고경위서

5) 증제5호 최초진단서(최초진단을 했을 경우)

6) 증제6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증제7호 사체 해부검사서(부검서)

8) 증제8호 의사소견서

9) 증제9호 진술서(목격자, 동료직원, 가족 등)

10) 증제10호 복무상황 자료

11) 증제11호 작업(업무)일지, 업무노트,

업무보고서 등 사본

12) 증제12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

13) 증제13호 의료보험카드 사본

14) 증제14호 건강진단서 (최근3개년)

15) 증제15호 임금대장(최근 1년분)

16) 증제16호 시간대별 기온변동상황 등 기타 사고와 관련된 참고자료

※ 첨부된 모든 서류의 내용이 일관성있게 작성되었는지를 필히 확인

마.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시행규칙[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헤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22. (생략)

II. 자체보상

1. 자체보상의 개요

가. 정의

제1장의 산재보험보상 이외에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보상을 말함

나. 자체보상 공통 적용사항

- 1) 보상여부 및 보상금의 결정 : 관할 보상·배상위원회 심의·의결
 - 2) 보상금 지급결정시 천원 미만은 절사
 - 3) 보상금 지급시기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4) 자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 당월 보수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 ※ 휴업급여차액보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산재법령 미적용자 보상

가. 보상대상

- 1)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직원으로 다음의 직원을 말함
- 2) 해외파견자. 단,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 및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산재법 제105조의2)
- 3)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직원 (산재법 제40조 제3항)

나. 보상범위

- 1) 해외파견자 : 산재법령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 단, 일시금으로 지급
- 2) 3일 이내의 요양 : 근로기준법령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

다. 보상금 신청

- 1) 신청서류
 - 가)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제2호서식)
 - 나) 사고경위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다) 목격자 진술서
 - 라)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마) 기타 참고서류
- 2) 신청기한 :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월이내

3. 휴업급여 차액보상

가. 지급대상

업무상재해로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직원

나. 보상금액: 휴업급여와 보수의 차액

다. 지급방법

매월 급여지급일에 보수의 100%를 선지급하고, 회사에서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여 여입처리

라. 비과세 소득

산재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마. 업무처리절차

1) 산재요양 신청 및 승인

가) 재해자 산재요양 신청

나) 공단 요양승인여부 결정통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다) 산재자는 결정통지서 사본을 총무부서에 제출

라) 소속기관에서는 복무처리를 정리 (병가 등 => 공상휴가)

2)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

가) 평균임금산정내역 작성 : 대체지급보험급여금청구서 뒷면

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의 작성

- 청구서상의 "근로자" 및 "원래의 수급권자" : 재해자 인적사항

- "⑩ 대체지급보험급여의 종류"란 : "휴업급여"

-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란 : 급여통

합기관의 계좌번호

※ 공단에서 수령계좌의 가입자명을 소속 기관장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수령하여 급여통합기관으로 송금

- 청구서상(하단부)에 재해자의 성명 기재 및 확인날인

- 청구서는 2부를 작성 (소속기관, 공단 각1부씩 보관)

다) 첨부서류 : 보험급여대체지급증명서

3) 휴업급여의 여입

가) 급여통합기관에서 휴업급여를 인출하여 해당 예산과목으로 여입

나) 소속기관에서 수령한 경우 급여통합기관으로 송금 및 입금표 송부

※ 휴업급여업무처리흐름도 참조 (다음쪽)

바. 각급기관별 휴업급여업무 처리범위

1) 지역본부 : 본부자체, 현업기관의 휴업급여 입금확인 및 여입

2) 지사 : 지사 자체 및 산하 지점

4. 본인부담액 보상

가. 요양기관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2) 예외

가)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

나)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나. 보상기한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까지

다. 보상금 한도

회계년도 기준 연간 5백만원 (요양비가 2이상의 회계년도에 포함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으로 일할계산)

라. 보상범위

1) 상급병실 차액

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나) 병원측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

2) 식대

가)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함에 따라 추가로 부가되는 식대 차액

나) 영양식은 상병의 치유에 부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3) 특수검사 :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며, 검사에 필요한 자재비 포함)

4) 기타진료 : 보조기료 등 기타진료비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5) 한방요양

가) 의료기관 : 공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

나) 한방첩약 :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치료제에 한하여 보상 (1회 15만원까지 연간 30만원까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 시술료(침, 구, 부항술료) 및 지정진료비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라) 상급병실차액, 식대, 특수검사, 기타진료는 위 양방의 보상범위를 준용

마) 보상 제외대상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항목의 요양비

3) 의사의 소견이 없는 비급여항목의 요양비 및 타의료기관 동시진료비

4) 진료비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마. 보상금신청

1) 신청서류

- 가)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 나) 요양결정통지서 사본
 - 다) 진료비계산서 (재해자의 성명, 산재구분, 진료기간 및 본인부담액 등이 명시되고, 산재담당의료기관이 기명·날인한 것)
 - 라) 각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마) 기타 참고서류
- 2) 신청기한
-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월이내. 단, 요양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월 단위로 신청가능

5. 형사피의보상

- 가. 보상범위
 - 1) 보상대상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피의자가 된 직원의 구속기간중 감액된 보수, 벌금, 변호사수임료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제외)
 - 2) 제외대상 사고
 - 가) 고의사고, 뺑소니사고, 주취중사고
 - 나) 사적용무 처리중 발생한 사고
- 나. 보상금 한도
 - 1) 보수및 벌금 상한선 폐지
 - 2) 변호사 수임료: 최고 500만원까지
- 다. 신청절차
 - 1) 신청서류
 - 가)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 나) 교통사고조사서(경찰)
 - 다) 영수증
 - 라) 형사피의자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마) 기타 참고서류
 - 2)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월 이

내

Ⅲ. 제3자 배상

1. 정의

회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등의 하자 또는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배상

2. 배상기준

민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

3. 신청절차

- 가. 신청서류
 - 1) 배상금지급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 2)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3) 사고경위서
 - 4) 호적등본
 - 5) 인감증명서
 - 6) 진료비명세서
 - 7) 관계기관의 사실증명서
 - 8) 기타 참고자료
- 나. 신청기한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민법 제766조 제1항)

4.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 대상: 배상사고가 쌍방과실에 기인한 경우
- 나. 과실비율의 판정
 - 1) 판정기준 : 유사사건의 판례 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정

2) 과실비율을 판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실비율을 적용

3) 피해자의 과실이 경과실일 경우 : 3할 이내

4) 피해자의 과실이 중과실일 경우 : 5할 이내

5. 합의배상

가. 합의배상의 대상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경우

나. 합의배상의 방법

1) 손해배상합의서 (별지제4호서식)

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날인(2부)

나) 합의서는 공증을 받을 것

2) 사전지급

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유리한 합의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합의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합의전에 지급 가능

3) 배상액의 공제

피해자가 사고 관계자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합의할 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